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8. 29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'97년 8월 20일

○ 회부일자 : '97년 8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('97. 8. 28)

-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○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재상정 ('97. 8. 29)

-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기획관리실장 : 김 동 기)

가. 제안이유

○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사무의 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노동조합 및 노동관련 조정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 업무의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른 관례조문 삭제

-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
- 석도·궤도사업 업무의 일원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위임.
- 조직개편에 따른 관장부서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태 인)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사무의 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골자로는

첫째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경제과에서 관장하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업무인 일련번호 1-4, 5, 6호를 삭제하고

둘째,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업과 소관업무로 되어있는 일련번호 제2호중 "전기안전 관련규정 제출수리 및 변경명령"을 "전기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"으로 하며

셋째,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문화체육과 사무중 일련번호 제1, 3, 4호를 각 1, 2, 3호로 하여 문화예술과에서, 일련번호 제2호는 1호로 하여 체육청소년과에서 취급토록 관장부서와 사무를 정비하고

넷째, 석도·궤도법의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사무중 일련번호 1-47호를 신설함과 동시에 석도·궤도사업 업무의 일원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

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5. 토론요지 : 없 음
6. 수정안의 요지 : 없 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 5명, 찬성 5명)
8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10. 심사보고서 붙임 서류
 -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
 - 신·구조문 대비표